

## 고

## 시

## ●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- 448 호

##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435호(2023.07.21.)로 개발계획 수립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에 대하여 정정 고시된 「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」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7월 31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(사업기간 연장) 수립 변경

1. 도시개발구역의 명칭(변경없음) :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
2.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  - 위 치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
  - 면 적 : 646,623.3㎡ [1단계 : 631,931.5㎡ / 2단계 : 14,691.8㎡]
3.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(변경없음) :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기능의 특화를 위한 미디어 밸리 조성
4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(변경없음)
  - 시 행 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  -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  - 대표자의 성명 : 이한준
5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(변경)
  - 시행기간 : 구역지정일(2010년 5월 19일) ~ 2023년 12월 31일  
 [당초 1단계 : 2010년 5월 19일~2023년 7월 31일, 2단계 2010년 5월 19일~2023년 12월 31일]  
 [변경 1단계 : 2010년 5월 19일~2023년 8월 11일, 2단계 2010년 5월 19일~2023년 12월 31일]
  - ※ 지적측량성과도 심사를 위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
  - 시행방법 :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
6.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(변경없음)
7.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8.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
  - 해당사항 없음
9.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(변경없음)
  -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
10. 관계도서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(관계도서 게재생략)
11.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###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(사업기간 연장) 변경 인가

1. 사업의 명칭 :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(변경없음)
2. 사업의 목적(변경없음)
  -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기능의 특화를 위한 미디어밸리 조성
3.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  - 위 치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
  - 면 적 : 646,623.3㎡ [1단계 : 631,931.5㎡ / 2단계 : 14,691.8㎡]
4. 시행자(변경없음)
  - 시행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
  -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  - 대표자의 성명 : 이한준
5. 시행기간(변경)
  - 구역지정일(2010년 5월 19일) ~ 2023년 12월 31일  
 [당초 1단계 : 2010년 5월 19일~2023년 7월 31일, 2단계 2010년 5월 19일~2023년 12월 31일]  
 [변경 1단계 : 2010년 5월 19일~2023년 8월 11일, 2단계 2010년 5월 19일~2023년 12월 31일]
  - ※ 지적측량성과도 심사를 위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
6. 시행방식 :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(변경없음)
7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포함)의 결정내용 (변경없음)
8. 관계도서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(관계도서 게재생략)
9.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·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(변경없음)
  -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,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
  -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
  -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
  -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
  - 산지관리법 제14조·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지전용신고
  -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전용허가